



제 425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허용 〉

■ 정진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0390호)

2025. 5.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화 실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허용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진욱의원 등 34인

(2) 제 안 일 : 2025. 5. 7.

(3) 회 부 일 : 2025. 5.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실질적 권리구제에 중대한 한계를 초래하고 있음

법원의 재판이기만 하면,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을 수 없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사실심의 절차에서 기본권적 고려가 결여되었거나 명백히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해석 또는 적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결로 귀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적 판단이 봉쇄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헌법은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국가권력을 헌법에 따라 행사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법작용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다른

법률적 구제절차가 사실상 차단된 경우에까지 헌법재판의 문을 닫아두는 것은 헌법소원의 본질과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됨

이에 본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제도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실질화하려는 것임 제 68조 제1항 개정).

Ⅲ. 검토의견

1.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허용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헌법소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임(안 제68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u>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u> 는 <u>헌법재판소에</u>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 사유) ① ----- ----- ----- ----- <u>헌법재판소에</u>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나. 현행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따른 헌법소원제도

「대한민국헌법」 제111조제1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제5호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대한민국헌법」 제111조제1항]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한편,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서는 헌법소원심판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68조제1항에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헌마사건),

제68조제2항에서는 제41조제1항1)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위헌심사형 헌법소원, 헌바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한정위헌, 2016헌마33, 2016. 4. 28.,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단순위헌, 2014헌마760, 763(병합), 2022.6.30.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1)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 ② 제1항의 당사자의 신청은 제4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
- ③ 제2항의 신청서면의 심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54조를 준용한다.
- ④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 ⑤ 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1항의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제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1998년 8월 5일 「헌법재판소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하였고, 이후 일부 문구 수정²⁾ 외에는 현재까지 내용상의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공권력”이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므로³⁾, ①법률 또는 입법부작위에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입법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②행정권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행정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으나, ③사법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개정 연혁

헌법재판소법(1988. 8. 5. 제정)	헌법재판소법(2011. 4. 5. 일부개정)
제68조(청구사유) ①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u>후가</u> 아니면 청구할 수 <u>없다</u> .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u>후에</u> 청구할 수 <u>있다</u> .

3) 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99헌마139·142·156·160(병합)

의 경우 현행법상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 중에서도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한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이 가능하다고 보아 기존의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결정을 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바 있고⁴⁾,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위헌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6헌마33)을 하였다가, 최근 “위헌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14헌마760, 2014헌마763(병합)하여 법원의 재판의 경우에도 일부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한 바 있음.

[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6헌마33]

헌법재판소는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안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한정위헌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을 선고하였다.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의 구속을 받고 헌법에의 기속은 헌법재판을 통하여 사법절차적으로 관철되므로, 헌법재판소가 헌법에서 부여받은 위헌심사권을 행사한 결과인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

4)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 등

치단체를 기속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하여 한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헌법 제107조 및 제111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결국 그러한 판결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헌법재판소의 존재의의, 헌법재판제도의 본질과 기능, 헌법의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치주의의 원리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겠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 구법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관하여는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러한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14헌마760, 2014헌마763(병합)]

헌법은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고(헌법 제107조, 제111조) 헌법재판소가 헌법에서 부여받은 위헌심사권을 행사한 결과인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따라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법원의 재판은 그 자체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더라도,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수호하고 헌법이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가 다시 최종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의 범위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그에 대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허용하여야 한다.

(중간 생략)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법원이 법률에 기속된다는 당연한 법치국가적 원칙을 확인하고, ‘법률에 의한 재판, 즉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헌재 1992. 6. 26. 90헌바25; 헌재 1993. 7. 29. 90헌바35 참조).

법 제75조 제7항은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소송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 여기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결정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법 제47조 제3항 및 제4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이 경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도 재심청구를 허용하고 있고, 법 제75조 제6항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 이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결정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여 재심사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들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들은 모두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으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되고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대법원은 2022년 7월 법률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그 법률 조항에 관한 특정한 내용의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한정위헌 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⁵⁾가 규정하는 위헌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고, 법원을 기속하거나 재심사유가 될 수 없으며, 법

5)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령의 해석·적용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이므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된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하며 한정위헌결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⁶⁾.

라. 검토의견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법작용을 통한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 또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을 강화하고, 국가작용이 헌법의 중심적 가치인 기본권에 보다 부합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함에 개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재판소원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찬반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각각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6) 경향신문, “대법원 “헌재는 판결을 취소할 권한 없다” 헌재 결정 정면 반박...25년 만에 대법·헌재 ‘정면충돌’”, 2022년 7월 6일자 기사, 문화일보, “헌재 vs 대법...‘최고 사법기관은’”, 2022년 7월 22일자 기사 등 참조

우선, 재판소원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의 주된 논거는 다음과 같음.

첫째,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유린에 대한 반성으로 도입된 제도인만큼 사법권을 비롯한 3권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통제함으로써 기본권 보호를 강화함에 그 본질적 의미가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바, 국가 공권력 전부를 통제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제도가 민주적 정당성이 강한 입법권은 통제하면서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사법권과 행정권은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 기능적 권력분립원리에 반하며, 입법작용, 행정작용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 받은 사람과 달리 사법작용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람에게는 기본권 구제의 공백이 발생하는 등 평등의 원칙에 반하므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함⁷⁾.

둘째,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경우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통하여 법원에 의한 기본권 침해로부터의 국민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함. 즉, 법원은 재판활동을 통해 다른 국가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도 하지만, 재판을 통해 기본권을 침해하기도 하는바, 재판절차에서 소송당사자들의 기본권 침해를 법원 자체에 의한 심급제도만으로 구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대법원의 기본권 침해가 있는 경우 구제하여 줄 수 있는 상급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권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서는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⁸⁾.

7)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법 개정의견』, 2013. 6. 14. 의안번호 ZZ19076

셋째, 재판소원을 도입할 경우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에서 발생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 사법 불일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 사법의 통일성 확보 측면에서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⁹⁾. 실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특정 법률조항에 대하여 같은 날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을, 대법원은 이 법률조항을 합헌으로 보아 그대로 사건에 적용하여 확정된 경우가 있었는바¹⁰⁾, 이러한 사법의 불일치 문제는 재판소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함.

다음,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의 주된 논거는 다음과 같음.

첫째, 「대한민국헌법」 제101조제1항¹¹⁾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사법작용은 법원에 전속시키고 있는데,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법원에 전속된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재판소원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함¹²⁾.

둘째, 「대한민국헌법」 제107조제2항은 대법원이 최고법원 및 헌법기관의 지위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재판을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구조

8) 정태호, 『주석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5. 6. 1037~1038면.

9) 차진아, “재판소원의 도입 필요성과 인정범위에 관한 연구”, 고려법학 제60호(2011년 3월), 423~424면.

10) 헌법재판소 2005. 11. 24. 2004헌가28 결정,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두8061 판결, 법률신문, “헌재 “위헌” - 대법원 “적용” 동시선고 효력 논란”, 2005. 12. 12.자 기사 참조.

11)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대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12) 유남석,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금지의 논리 및 정책적 이유”, 「재판자료」 제75집(헌법문제와 재판)(1997.6.) 281~339면

를 취하고 있는데,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심사에 이어 제4심의 법원으로 기능하게 되어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침해하고, 국민이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더라도 여전히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함¹³⁾.

셋째, 헌법재판소의 연도별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등에 따르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마 사건)이 헌법재판소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청구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는바, 재판소원을 도입할 경우 헌법소원의 남용으로 인해 사건이 크게 늘어나 사법체계의 비효율, 헌법재판소의 업무과중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현행법에는 대법원의 재판을 취소하는 경우 후속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법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함¹⁴⁾.

따라서 재판소원 도입에 관하여는 찬반 의견을 각각 고려하고, 재판소원 도입시 기대할 수 있는 기본권보장의 실효성 증대 측면과 헌법재판소의 과중한 업무부담 및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 관계 등 요소를 고려하여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58

13) 박홍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배분”, 「헌법재판의 회고와 전망」, 헌법재판소(1998), 274~275면.

14) 이부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법조」 제573호, 2004, 111면.

참고 1

연도별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접수사건합계(A)	1,859	1,951	2,626	2,427	2,730	3,241	2,827	2,829	2,591	2,522
진행중 건수 합계(B)	0	0	0	0	5	44	106	193	297	495
결정 건수 합계(C)	1,824	1,908	2,598	2,372	2,674	3,133	2,669	2,604	2,258	2,001
취하건수 합계(D)	35	43	28	55	51	64	52	32	36	26
○ 허가사건										
-접수 건수	37	20	35	17	31	20	38	43	25	18
-진행중 건수	-	-	-	-	-	2	2	8	11	15
-결정 건수	33	20	35	17	31	17	36	32	11	3
-취하 건수	4	-	-	-	-	1	-	3	3	-
○ 현나사건										
-접수 건수	-	1	-	-	-	-	1	-	4	9
-진행중 건수	-	-	-	-	-	-	-	-	1	3
-결정 건수	-	1	-	-	-	-	1	-	3	6
○ 현다사건										
-접수 건수	1	-	-	-	-	-	-	-	-	-
-결정 건수	1	-	-	-	-	-	-	-	-	-
○ 현라사건										
-접수 건수	8	9	2	2	6	5	2	5	10	9
-진행중 건수	-	-	-	-	-	-	-	-	5	8
-결정 건수	6	7	1	2	6	5	2	5	5	-
-취하 건수	2	2	1	-	-	-	-	-	-	1
○ 현마사건										
-접수 건수	1,325	1,379	1,987	1,819	2,062	2,472	2,201	2,322	1,935	1,788
-진행중 건수	-	-	-	-	2	24	66	113	145	270
-결정 건수	1,310	1,350	1,963	1,769	2,014	2,394	2,091	2,184	1,769	1,496
-취하 건수	15	29	24	50	46	54	44	25	21	22
○ 현바사건										
-접수 건수	488	542	602	589	631	744	585	459	617	698
-진행중 건수	-	-	-	-	3	18	38	72	135	199
-결정 건수	474	530	599	584	623	717	539	383	470	496
-취하 건수	14	12	3	5	5	9	8	4	12	3

자료: 헌법재판소, 2025. 3